

# 2022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조치결과
<p><b>1) 예산 편성 및 확정 업무 절차 개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단은 사업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매년 9월 정기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있으나, 국·도비, 지방비, 보조금, 출연금 등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고, 잉여금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 처리하여야함.</li> </ul> <p><b>2)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결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의 경우 12월 말까지 명시이월비로 결정이 가능함. 향후 명시이월비 결정시 내부결재 후 이월 하여야 할 것임.</li> </ul> <p><b>3) 물품구입 등 물품관리대장 적정 처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품대장 관리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, 내용연수 확인 후 기간이 지난 물품이나 노후화 된 물품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매년 최신화 하고 폐기물품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정기이사회를 거쳐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였으나 감사지적 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 맞추어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예산 승인 보고를 하고 있음.</li> <li>- 감사지적 후 재단 예산회계규정 제81조에 의거하여 이월 대상사업(1건)을 내부결재 완료 후 명시이월 하였음.</li> <li>- 11월 정기재물조사 계획 수립 후 규정에 따라 노후화된 물품은 폐기처분하고 최신화 예정 중에 있음. 24년 부터는 연 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 예정.</li> </ul>